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5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분야뿐 아니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민간분야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용도를 민간분야까지 확대(안 제6조)
- 나.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에 관한 절차 명시화(안 제7조)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확대(안 제10조)
- 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명시화(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 자.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 차. 그 밖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에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 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와 주택 임차비용 용자 규모 및 용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의 회계관리)”를 “(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 ②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중 특정 성별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된다”를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제10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추천 구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나.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를 “위원장은 회의록의”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p> <p>2. 3. (생략)</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생략)</p> <p><u><신 설></u></p>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영 제74조에 따른 용도</p> <p>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p> <p>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p>	<p>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 ----- ----- -----.</p> <p>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p> <p>2. 3.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p>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p> <p>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p>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역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다.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
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
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
리

마.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바.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
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
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아.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
관, 유수지의 수문 관측시설 등
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자.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
량·보수사업

차.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
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카.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3. 재난 예보·경보 시설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
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
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
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
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
치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
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
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
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차. 그 밖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구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
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
급 복구 및 응급조치

나.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구입
(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
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비 제외) 및 장비입
차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
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
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
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
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
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필요한 부대경비

2.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
하는 시설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
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
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
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
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
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에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
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
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삭 제

8. 삭 제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영 제74조제8호
에 따른 대출금의 한도액·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
금의 대출 조건과 시중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재
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
다.

<신 설>

제9조(회계공무원) ①·② (생 략)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
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
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
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
차비용 용자 등) 법 제40조부터 제4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
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와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 및 용자조
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① 기
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
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조
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담당관이 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중 특정 성별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
-----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추천 구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도로관리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⑦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신 설>

나.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삭 제>

<삭 제>

④·⑤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⑤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⑥ 위원장은 회의록의 -----
-----.

제13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